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342 호

2000 년 9 월 16 일 토 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97호(무단방치차량강제폐차공고) -----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98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 ----- 5
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99호(부의안전공고) ----- 2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00호(남동청소년쉼터위탁운영체모집공고) --- 2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01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등) ----- 28
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02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과규칙등) ----- 34
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공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03호(담배소매인지정공고) ----- 40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공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97호

무단방치차량강제폐차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이전(폐차)명령하오니, 해당차량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아래 공고 기간까지 자진이전(폐차)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처리(폐차, 매각)하고 아울러 동법 제81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9. 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0년 9 월 14일 ~ 2000년 9 월 23 일 까지 (1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00년 9 월 23 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3-2 ☎ 814-7077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 남동구 고잔동 184번지 ☎ 442-6660
 - 기전산업(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 814-4400
4. 강제처리(폐차)대상 차량 : 인천80가9382 외 12대

강 제 처 리 대 상 차 량

연번	강제처리대상차량		강제처리 대상차량 소유주		방 치 장 소 (인천 남동구)	비 고 (견인보관)
	차량번호	차 명	성 명	주 소		
532	인천80가9382	와이드봉고 킹캡	고금복	인천 남동 구월 1311-25 성부빌라 2/201	구월4동 1312-6 벽산(아) 1동 후문	
533	인천31가3070	쏘나타 오토매틱	김동주	인천 동구 금곡 39-55	간석1동 546-8 동아원목은돌마루 담장	
534	번호미상	르망			간석1동 546-8 동아원목은돌마루 담장	
535	번호미상	이륜자동차			간석2동 203 간석주공(아) 5동 앞	인천폐차 사업소
536	번호미상	이륜자동차			간석2동 203 간석주공(아) 5동 앞	인천폐차 사업소
537	인천7머3236	와이드봉고 1톤	조기동	인천 부평구 청천동 51	만수5동 895-6 현대빌라 앞 주차라인	
538	인천7더5897	포터	박해중	인천 남동 만수동 956-1	남동공단 144블럭 3롯데 (주)엔트렘 내	
539	인천7더4352	와이드봉고 킹캡	(주)알앤디 엔지니어링	인천 남동 고잔 642-10 72블럭 11롯데	남동공단 73블럭 6롯데 트라이맥스 담장	
540	번호미상	쏘나타			만수5동 916-2 킹자동차공업사 뒤	서울폐차 사업소
541	인천31머2542	쏘나타 오토매틱	박승걸 박복귀	인천 남동 도림동 249-1 천우빌라 7/b02	도림동 247-11	
542	인천7가4369	포터슈퍼캡	최윤자	인천 부평 부평동 894-1	도림동 247-11	
543	인천30나2658	엑셀	한인숙	인천 서구 심곡 31-1-2 성창에이스타 5/303	구월4동 1259 영진주택 입구	
544	전북83가6682	포터더블캡	유 현	전북 정읍 칠보면 반곡리 379	간석4동 527-6 LG정유주유소 뒤 담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98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인천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장수동 343-1번지 일대 “인천대공원 조성 공사”의 물건변경과 관련하여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사실확인 원의 발급에 앞서 관계공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별첨
2. 편입대상 물건 및 정당 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0.9.9- 2000.10.8(30일간)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00.10.8까지) 불복의 사유를 문서(관계서류)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6. 이의신청 접수장소: 남동구청 세무과(재산세팀 ☎453-2279)

2000. 9. 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장수동 343-1

- 소유주 : 오금섭

(단위 : 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량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량	
전	산수유	H4.0*R13	5	전	산수유	H2.5*R7	1	
	살구나무	H4.0*R12	1			H4.0*R13	1	
	두충나무	H8.0*R30	0			H5.0*R15	1	
	호도나무	H8.0*R20	2		호도나무	H8.0*R19	1	
	산딸나무	H2.0*R4	50			H10*R30	1	
	산목련	H8.0*R30	1		가래나무	H6.0*R17	1	
	보리매	H2.0*R4	8		산딸나무	H1.0*R2	1	
	올려	H2.0*R6	55			H1.5*R3	4	
	느릅나무	H4.0*R5	1174			H1.5*R4	2	
		H5.0*R7	174			H2.0*R5	5	
		H6.0*R9	129			H2.0*R6	7	
		H7.0*R12	70			H2.5*R7	4	
		H8.0*R14	30			H3.0*R8	8	
	꽃개오동	H8.0*R35	1			H4.0*R10	1	
		H8.0*R30	1		느릅나무	H2.5*R3	2	
		H7.0*R20	2			H2.5*R4	4	
		H6.0*R18	50			H3.0*R5	18	
		H6.0*R12	1000			H3.5*R6	10	
		H4.0*R8	1790			H3.5*R7	22	
	묘목		16			H3.5*R8	41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장수동 343-1

- 소유주 : 오금섭

(단위 : 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 고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전	네군도단풍	H12*R30	0	전	느릅나무	H4.0*R9	25	
	벗나무	H6.0*R20	1			H4.0*R10	63	
		H5.0*R18	2			H4.5*R11	36	
		H4.0*R14	25			H5.0*R12	75	
		H3.0*R8	62			H5.0*R13	52	
		H2.5*R9	31			H5.0*R14	33	
	벗나무	H2.0*R4	131			H5.0*R15	89	
	수양버들	H15*R50	1			H5.5*R16	21	
		H12*R30	0			H5.5*R17	26	
		H10*R25	0			H5.5*R18	29	
		H8.0*R14	0			H5.5*R19	15	
	은행나무	H15*R50	1			H5.5*R20	56	
		H15*R35	3			H6.0*R21	3	
		H12*R24	1			H6.0*R22	2	
		H12*R16	2			H6.0*R23	4	
		H10*R12	28			H6.0*R24	3	
	베니	H1.0*R4	1			H6.0*R25	8	
	불도화	H1.7*R3	0			H6.0*R26	1	
	매화	H1.0*R5	0			H6.0*R27	1	
	자산홍	모종	0			H6.0*R30	2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장수동 343-1

- 소유주 : 오금섭

(단위 : 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량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량	
전	자산홍	H0.5*R3	0	전	느릅나무	H7.0*R32	1	
	단풍나무	H6.0*R17	52			H7.0*R34	1	
		H6*R15	48		꽃개오동	H2.0*R1	42	
		H4.0*R10	96			H2.0*R2	92	
		H3.0*R9	335			H2.0*R3	129	
		H1.0*R7	1485			H2.0*R4	59	
		H1.0*R5	190			H2.0*R5	119	
	주목	H2.5*R10	0			H3.0*R6	114	
		H2.0*R7	0			H3.0*R7	104	
		H1.5*R4	0			H4.0*R8	162	
		H1.0*R2	0			H4.0*R9	71	
	탱자나무	H6.0*R15	100			H5.0*R10	71	
		H1.8*R3	0			H5.0*R11	62	
	설중매	H1.5*R2.5	120			H5.0*R12	76	
	등나무	R10	0			H5.0*R13	60	
		R3	0			H5.0*R14	42	
		R3	0			H5.0*R15	37	
	개나리	R2.3지	0			H5.0*R16	12	
	측백나무	H1.0*R6	116			H5.0*R17	8	
		H2.0*R8	0			H5.0*R18	7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장수동 343-1

- 소유주 : 오금섭

(단위 : 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전	측백나무	H2.5*R12	0	전	꽃개오동	H5.0*R19	3	
		H8*R17	0			H5.0*R20	5	
		H6*R14	0			H5.0*R21	1	
		H4*R5	0			H6.0*R26	1	
		H6*R2	0			H6.0*R29	1	
	잣나무	H8*R20	1			H8.0*R34	1	
		H15*R30	0		왕벚나무	H1.5*R1	100	
		H10*R13	42			H1.5*R2	111	
		H8*R6	45			H2.0*R3	97	
	소나무	H8.0*R25	1			H2.0*R4	64	
		H10*R30	5			H2.5*R5	54	
	원주목	H1.5*W1.5	17			H3.0*R6	26	
		H2.0*W2.0	20			H3.0*R7	20	
		H2.5*W2.5	25			H3.0*R8	14	
		H2.5*W3.0	0			H3.5*R9	5	
	꽃사과	H1.5*R5	45			H3.5*R10	3	
		H1.8*R8	3			H3.5*R11	1	
		H2.5*R12	1			H3.5*R12	1	
		H2.5*R27	0		수양버들	H15*R50	1	
	묘목		0		은행나무	H2.0*B2	1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장수동 343-1
- 소유주 : 오금섭

(단위 : 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량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량	
전	향나무	H1.2*R5	5	전	은행나무	H2.0*B3	1	
		H2.0*R10	20			H2.5*B4	3	
		H3.0*R14	25			H2.5*B5	4	
		H4.0*R17	3			H3.0*B6	5	
	매자나무	H1.0*R3	0			H3.0*B7	2	
		H1.2*R5	0			H3.0*B8	4	
	감나무	H5.0*R20	0			H3.5*B9	3	
		H4.0*R9	0			H3.5*B10	3	
	라일락	H3.0*R8	0			H12*B28	1	
		H5.0*R15	0			H15*B34	1	
	박태기	H1.3*R4	0		베니	H2.0*W1	1	
	마로니에	H1.0*R4.5	1210		청단풍	H1.5*R1	8	
		H1.5*R7.5	3389			H1.5*R2	148	
	목련	H2.5*R4	2			H1.5*R3	229	
		H4.0*R8	24			H2.0*R4	200	
		H6.0*R10	2			H2.0*R5	363	
		H8.0*R20	1			H2.0*R6	215	
	구상나무	H0.5*R3	0			H2.5*R7	196	
		H2.5*R5	0			H2.5*R8	146	
	고엽나무	H3.0*R6	0			H2.5*R9	37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장수동 343-1

- 소유주 : 오궁섭

(단위 : 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전	고엽나무	H7.0*R20	0	전	청단풍	H3.0*R10	105	
	모과나무	H1.7*R2	0			H3.0*R11	22	
		H2.0*R4	0			H3.5*R12	47	
		H3.0*R6	0			H3.5*R13	5	
		H3.0*R8	0			H3.5*R14	5	
		H6.0*R6	108			H3.5*R15	12	
	후박나무	H4.0*R20	0			H4.0*R17	2	
		H5.0*R50	0			H4.0*R18	1	
		H3.0*R6	9			H4.0*R19	1	
		H4*R12	11			H4.0*R20	1	
	대추나무	H4.0*R5	148		홍단풍	H1.5*R1	6	
	이팝나무	H2.0*R5	60			H1.5*R2	38	
	마가목	H2.0*R3	20			H1.5*R3	96	
	대왕참나무	H5.0*R6	2400			H2.0*R4	89	
		H6.0*R9	6400			H2.0*R5	108	
		H7.0*R13	2410			H2.0*R6	84	
		H8.0*R10	42			H2.5*R7	61	
		H4*R1-4	6200			H2.5*R8	49	
	플라타나스	H10*R35	2			H2.5*R9	19	
	사철나무	H1*R5	13			H3.0*R10	27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장수동 343-1

- 소유주 : 오궁섭

(단위 : 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전	사철나무	H1.5*R3	4	전	홍단풍	H3.0*R11	7	
	연무홍	묘목	0			H3.5*R12	16	
	가래나무	H6*R15	1			H3.5*R13	4	
		H4*R7	1			H3.5*R15	17	
	밤나무	H12*R30	17		탱자나무	H1.5*R2	1	
						H1.5*R3	3	
						H1.5*R4	1	
						H2.0*R5	2	
						H2.0*R6	2	
						H2.0*R7	13	
						H2.5*R8	10	
						H3.0*R10	5	
						H3.5*R12	7	
						H3.5*R13	2	
						H3.5*R14	1	
						H6.0*R15	10	
						H6.0*R17	1	
						H6.0*R18	1	
						H6.0*R19	1	
					매화나무	H1.0*R2	2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장수동 343-1

- 소유주 : 오금섭

(단위 : 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량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량	
				전	매화나무	H1.0*R3	7	
						H2.0*R4	20	
						H2.0*R5	32	
						H3.0*R6	26	
						H3.0*R7	8	
						H3.0*R8	2	
					잣나무	H7.0*R3	5	
						H7.0*R4	10	
						H8.0*R5	24	
						H8.0*R6	12	
						H8.0*R7	24	
						H9.0*R8	20	
						H9.0*R9	10	
						H9.0*R10	17	
						H10*R11	6	
						H10*R12	4	
						H10*R13	9	
						H10*R14	10	
						H10*R15	9	
						H11*R16	5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장수동 343-1

- 소유주 : 오금섭

(단위 : 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전	잣나무	H11*R17	5	
						H11*R18	4	
						H11*R19	2	
						H11*R20	10	
						H11*R21	3	
						H12*R23	3	
						H12*R24	1	
						H12*R25	1	
						H12*R26	1	
						H12*R27	1	
						H12*R30	1	
						H12*R32	1	
					소나무	H10*R30	1	
						H10*R32	1	
						H10*R34	1	
						H12*R62	1	
					둥근주목	H2.0*W1.5	2	
						H1.7*W1.6	1	
						H2.5*W1.4	1	
						H3.0*W1.5	1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장수동 343-1
- 소유주 : 오금섭

(단위 : 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전	등근주목	H1.0*W1.0	1	
						H4.4*W1.7	1	
						H2.8*W2.0	1	
						H2.7*W1.4	1	
						H4.0*W1.5	1	
						H1.5*W0.7	1	
						H1.8*W1.0	1	
						H1.5*W0.7	1	
						H1.9*W1.0	1	
						H2.4*W1.1	1	
						H2.0*W1.2	1	
						H1.0*W0.8	1	
						H1.8*W1.1	1	
						H2.2*W0.9	1	
						H1.5*W0.8	1	
						H2.3*W1.0	1	
						H2.1*W1.1	1	
						H1.8*W1.0	1	
						H1.9*W1.0	1	
						H1.5*W0.5	1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장수동 343-1

- 소유주 : 오궁섭

(단위 : 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전	둥근주목	H1.0*W0.7	1	
						H1.9*W0.8	1	
						H1.2*W0.9	1	
						H2.0*W1.2	1	
						H1.0*W0.5	1	
					꽃사과	H1.5*R2	3	
						H1.5*R3	19	
						H2.0*R4	12	
						H2.0*R5	31	
						H2.5*R6	16	
						H2.5*R7	14	
						H2.5*R8	15	
						H2.5*R9	6	
						H2.5*R10	13	
						H2.5*R11	3	
						H3.0*R12	3	
						H3.0*R13	1	
						H3.0*R14	4	
						H3.0*R15	1	
						H3.0*R16	1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장수동 343-1

- 소유주 : 오금섭

(단위 : 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전	꽃사과	H3.0*R17	2	
					측백나무	H0.5*W0.1	7	
						H0.8*W0.4	1	
						H1.0*W0.6	1	
						H1.5*W0.4	1	
						H1.5*W0.6	1	
						H1.5*W0.8	4	
						H2.0*W0.6	1	
						H2.0*W0.8	5	
						H2.0*W1.2	1	
						H2.5*W0.3	1	
						H2.5*W0.5	2	
						H2.5*W0.6	1	
						H2.5*W0.7	7	
						H2.5*W0.8	8	
						H2.5*W1.0	8	
						H2.5*W1.2	3	
						H3.0*W0.3	1	
						H3.0*W0.6	2	
						H3.0*W0.7	4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장수동 343-1

- 소유주 : 오궁섭

(단위 : 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전	측백나무	H3.0*W0.8	13	
						H3.0*W1.0	14	
						H3.0*W1.2	5	
						H3.0*W1.5	2	
						H3.5*W0.7	1	
						H3.5*W0.8	2	
						H3.5*W1.0	5	
						H3.5*W1.2	1	
						H3.5*W1.5	1	
						H4.0*W0.5	1	
						H4.0*W1.0	1	
						H4.0*W1.2	1	
					향나무	H1.0*R5	1	
						H1.0*R8	2	
						H1.0*R10	4	
						H1.2*R9	2	
						H1.2*R10	1	
						H1.5*R8	2	
						H1.5*R9	1	
						H1.5*R10	1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장수동 343-1

- 소유주 : 오금섭

(단위 : 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전	향나무	H1.5*R11	1	
						H1.5*R13	1	
						H1.5*R14	1	
						H2.0*R9	1	
						H2.0*R10	1	
						H2.0*R11	2	
						H2.0*R12	1	
						H2.0*R13	1	
					둥근향나무	H1.2*W5	1	
					마로니에	H0.5*R2	155	
						H0.5*R3	207	
						H1.0*R4	481	
						H1.0*R5	743	
						H1.5*R6	676	
						H1.5*R7	694	
						H2.0*R8	475	
						H2.0*R9	141	
						H2.5*R10	191	
						H2.5*R11	26	
						H3.0*R12	8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장수동 343-1

- 소유주 : 오공섭

(단위 : 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전	마로니에	H3.0*R13	1	
					목련	H2.0*R5	1	
						H8.0*R19	1	
						H10*R23	1	
						H10*R26	1	
						H12*R36	1	
						H15*R50	1	
					모과나무	H3.0*R5	8	
						H3.0*R6	3	
						H3.0*R7	8	
						H3.0*R8	3	
						H3.0*R9	2	
						H3.5*R12	1	
					후박나무	H1.5*R1	8	
						H2.0*R3	4	
						H3.0*R5	3	
						H3.5*R8	1	
						H3.5*R9	1	
						H3.5*R10	2	
						H4.0*R14	1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장수동 343-1

- 소유주 : 오금섭

(단위 : 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전	후박나무	H4.5*R15	2	
						H4.5*R16	3	
						H5.0*R19	1	
						H5.0*R20	1	
						H5.0*R21	2	
						H9.0*R48	1	
					대추나무	H2.5*R3	6	
						H2.5*R4	7	
						H2.5*R5	27	
						H3.0*R6	22	
						H3.0*R7	16	
						H3.5*R8	25	
						H3.5*R9	2	
						H4.0*R10	1	
					이팝나무	H2.0*R3	3	
						H2.5*R5	8	
						H3.0*R6	3	
						H3.0*R7	5	
						H3.5*R8	4	
						H3.5*R9	1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장수동 343-1

- 소유주 : 오금섭

(단위 : 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량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량	
				전	이팝나무	H3.5*R10	1	
					대왕참나무	H2.0*R1	428	
						H2.0*R2	599	
						H2.0*R3	593	
						H2.5*R4	506	
						H2.5*R5	715	
						H2.5*R6	511	
						H2.5*R7	459	
						H3.5*R8	359	
						H3.5*R9	75	
						H3.5*R10	256	
						H3.5*R11	20	
						H3.5*R12	334	
						H3.5*R13	93	
						H3.5*R14	7	
						H3.5*R15	261	
						H4.0*R16	9	
						H4.0*R17	8	
						H4.0*R18	7	
						H4.0*R19	3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장수동 343-1

- 소유주 : 오금섭

(단위 : 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전	대왕참나무	H4.0*R20	15	
						H4.5*R21	1	
						H4.5*R23	1	
						H5.0*R25	1	
						H5.0*R27	1	
					플라타나스	H8.0*B24	1	
						H10*B31	1	
					밤나무	H2.0*R3	1	
						H2.5*R5	1	
						H3.0*R10	1	
						H3.5*R15	1	
						H4.0*R23	1	
						H4.5*R26	1	
						H4.5*R27	1	
						H4.5*R28	2	
						H5.0*R30	1	
						H5.0*R34	2	
						H5.0*R35	2	
						H5.5*R36	1	
						H5.5*R38	1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장수동 343-1

- 소유주 : 오금섭

(단위 : 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지 목	물건의 종 류	규 격	수 량	
				전	밤나무	H6.0*R42	1	
						H6.0*R43	1	
						H6.0*R47	1	
					선주목	H2.0*W1.0	8	
						H2.5*W1.5	6	
						H3.0*W2.0	9	
					전나무	H3.0*W1.5	1	
					등나무	L*2.0m*R3	15	
					감나무	H1.5*R3	1	
						H2.0*R6	1	
					박태기나무	H2.0*R3	2	
						H2.0*R5	4	
						H2.0*R6	4	
						H2.0*R7	2	
					고엽	H3.0*R8	2	
					사철나무	H2.0*R5	13	
					마가목	H2.0*R1	3	
						H2.0*R2	2	
						H2.0*R3	5	
						H2.5*R4	3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99호

부의안전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제84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임시회)에 附議할 案件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안전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건

2. 공고기간

- 2000. 9. 10 ~ 제84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임시회) 종료시까지

3. 기 타

- 부의안전의 내용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 기획감사실 (☎453-2050)에 비치 열람(공람) 가능합니다.

2000. 9.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00호

남동청소년쉼터위탁운영체모집공고

남동구에서 설치한 남동청소년쉼터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0. 9. 1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위탁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규모(m ²)	주 요 시 설
남동청소년쉼터	인천 남동 만수 5-317 아주상가 4층	254.5m ² (77.1평)	콜라텍, DDR, 만화방, 휴게실

2.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1년

3.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서 지역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0. 9. 25 ~ 2000. 9. 30. 18:00까지 접수

나. 방 법 : 남동구청 2층 문화홍보실 방문 접수(☎ 453-2120)

다. 제출서류

- ① 위탁운영신청서 1부.
- ② 남동청소년 쉼터 사업계획서 1부.
- ③ 법인·단체 자산현황 및 일반현황, 법인·단체 대표이사이력서
- ④ 사회봉사 활동실적

5. 지원사항 : 남동청소년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기본경비

6. 위탁운영자 발표 : 선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2000. 10. 15)

7. 기타사항

가. 위탁운영 협약은 관련규정에 의거 선정일로부터 5일이내에 체결하여야 함.

나. 신청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은 무효로 함

라. 신청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홍보실(☎.453-212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01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2000년도 동기능전환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각 실과의 동장 등의 위임 또는 권한위임 사항을 개정된 위임조례 등에 의거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9.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2000년도 동기능전환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각 실과의 동장 등의 위임 또는 권한위임사항을 개정된 위임조례 등에 의거 관련 조례와 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코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 부과징수사무의위임 삭제(제1조)
-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위원의 위촉(제2조)
-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중 동장의추천 삭제(제3조)
- 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동장의 추천 삭제(제4조)
-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권한의 위임(제5조)
-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제6조)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관리위임사무 삭제(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0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주민자치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453-219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등중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개정)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위임)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서류송달의 방법)①영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수량 또는 우편 요금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류 송달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위촉)구청장은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49조의 요건을 갖춘자중 동(구월1, 구월4, 만수6, 장수서창, 남촌도림, 논현고잔)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위원으로 추천을 받은 농업인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단장)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를 삭제한다.

제4조(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대상)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를 삭제한다.

제5조(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개정)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통반의명칭 및 관할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등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7조(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①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특촉장·최고장등의 송달, 구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내부위임규정을 정하여 등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제1조(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 〈삭제〉 제17조의2(서류송달의 방법)①영·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류송달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①구청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법제47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9조의 요건을 갖춘자중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회의에서 추천을 받은자 중에서 능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1인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동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위원의 위촉)구청장은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9조의 요건을 갖춘자중 등(구월1, 구월4, 만수6, 장수서창, 남촌드림, 논현고잔)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원으로 추천을 받은 농업인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3조(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 제4조(단장)①단장은 단원중에서 등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생략>	제3조(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 제4조(단장)①-----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2조(대상)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증 법질서 확립에 의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등장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2조(대상)----- ----- ----- <삭제>-----
제5조(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21조(권한의 위임)구청장은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 보건소장등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21조(권한의 위임)----- ----- ----- 출 장소장에게 -----
제6조(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등장이 등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6조(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①----- ----- 주민자치위원회----- -----
제7조(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등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삭제>

[별지]

(별지 제1호서식)

농지관리위원추천서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 동을 대표하는 농지
관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 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인)

첨부서류 :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1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02호

인천광역시남동구세부과징수규칙등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공고

2000년도 동기능전환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각 실과의 동장 등의 위임 또는 권한위임 사항을 개정된 위임조례 등에 의거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9.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세부과징수규칙등중개정규칙(안)

2. 제정취지 :

2000년도 동기능전환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각 실과의 동장 등의 위임 또는 권한위임사항을 개정된 위임조례 등에 의거 관련 조례와 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코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 인천광역시남동구세부과징수규칙중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삭제(제1조)
- 인천광역시남동구세부과징수규칙 납세의고지중 출장소 또는 동장 삭제(제1조)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수입부과공개에관한규칙 공개 등의 방법중 동을 구로 개정(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0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주민자치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453-219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과징수규칙등중개정(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과징수규칙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과징수규칙개정)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를 삭제한다.

제4조(납세의 고지)제1항중 "출장소장 또는 등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징수결정액통지서)제1항중 "동별"란을 삭제하고 제2항중 "다음의"를 "징수결정액통지서의 난외 또는 이면에 개인별내역을 기재하였을"로 한다.

제2항중 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징수금의 수납)제1항중 "출장소 또는 등"을 삭제하고 제2항중 "출장소장 또는 등장의"를 삭제한다.

제13조(공시승달방법)중 "출장소장 또는 등장"을 삭제한다.

제22조(수납부작성)제1항중 "출장소장, 등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징수유예)중 "등장을 경유"를 삭제한다.

제67조(압류해제의 통지)제4항중 "등장"을 삭제한다.

제104조(공용 공익사업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신청 및 통지)제1항중 "등장을 경유하여"를 삭제하고 제2항중 "등장을 경유하여"를 삭제하고 제3항중 "또는 등장은"을 삭제한다.

제2조(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수입부과공개에관한규칙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수입부과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공개등의 방법)제1항중 "동에"를 "구"로 하고 제3항중 "등장의 요청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제1조(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과징수규칙)	제1조(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과징수규칙)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구청장은 시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증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출장소장, 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 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삭제>		
제4조(납세의 고지)①출장소장 또는 동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부(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한 후 납세고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와 취소 또는 경정의 경우 또한 같다.	제4조(납세의 고지)①구청장은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징수결정액통지서)①징수결정액통지서는 관할 구청, 동별로 소속 회계연도마다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5조(징수결정액통지서)①-----		
②징수결정통지서에 첨부할 개인별 조서는 다음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삭제> -----		
1. 동장으로부터 개인별 조서를 받아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	②-----		
2. 징수결정통지서의 난외 또는 이면에 개인별 내역을 기재하였을 때	----- 징수결정액통지서의 난외 또는 이면에 개인별 내역을 기재하였을 -----		
3. 기타 개인별 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더라도 등에서 개인별 내역을 알 수 있을 때	1. <삭제>		
	2. <삭제>		
	3.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징수금의 수납)①구세는 구, 출장소 또는 동의 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출납원과 그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구 금고(구 금고 수납 대행점 포함한다)가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

②수입금출납원 분임수입금출납원 또는 구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별지 제23호 내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서원부에 의하여 영수증을 납부(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수납부 및 징수부를 정리한 후 매일 수입일계표(회계규칙 제29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 출장소장 또는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 별지 제3호서식·제27호서식·제49호서식·제53호서식·제63호서식·제99호서식의 납부(납입)서에 의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서원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송시송달방법)구세조례 제17조의 규정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게 시판이라 함은 구청장, 출장소장 또는 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수납부작성)①출장소장, 동장, 소속공무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납부를 작성하여 과세대장 또는 개인별 납액조서에 의하여 개인별 세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의하여 처리되는 세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생략>

제6조(징수금의 수납)①<삭제>

②

<삭제>

제13조(송시송달방법)<삭제>

제22조(수납부작성)①구청장,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징수유예)①영	제30조의 규	제33조(징수유예)①	-----	-----
정에 의한 징수유예 신청서는 <u>등장</u>	-----	-----	-----	-----
을 <u>경유</u>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	-----	-----	-----
다.	-----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67조(압류해제의 통지)①~③ <생	제67조(압류해제의 통지)①~③ <현	제67조(압류해제의 통지)①~③ <현	-----	-----
략>	행과 같음>	행과 같음>	-----	-----
④구청장(<u>등장</u>)이 보관증인 재산을	-----	④ <삭제>	-----	-----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	-----	-----	-----	-----
다. 다만, 압류조서 여백에 영수사실	-----	-----	-----	-----
을 기입하여 서명 날인시킴으로써	-----	-----	-----	-----
영수증에 같음할 수 있다.	-----	-----	-----	-----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	-----
제104조(공용공익사업에 대한 재산	제104조(공용공익사업에 대한 재산	제104조(공용공익사업에 대한 재산	-----	-----
세의 감면 신청 및 통지)①조례 제	세의 감면 신청 및 통지)①	세의 감면 신청 및 통지)①	-----	-----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	-----	-----	-----	-----
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	-----	-----	-----
제5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u>등장</u> 을	-----	-----	-----	-----
<u>경유</u> 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	-----	-----	-----
다. 다만, 감면 결정을 받은 재산에	-----	-----	-----	-----
대하여는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	-----	-----	-----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②구청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을 받	②	-----	-----	-----
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결	-----	-----	-----	-----
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규칙	-----	-----	-----	-----
제52호서식에 의하여 <u>등장</u> 을 <u>경유</u> 하	-----	-----	-----	-----
여 통지함과 동시에 감면대장을 작	-----	-----	-----	-----
성 비치하여야 한다.	-----	-----	-----	-----
③제2항의 재산세 감면을 받은 재산	③	-----	-----	-----
이 재산세의 감면을 받을 사유가 없	-----	-----	-----	-----
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또는 <u>등장</u>	-----	-----	-----	-----
은 지체없이 별지 제58호서식에 의	-----	-----	-----	-----
하여 구청장에게 폐지 신고를 하여	-----	-----	-----	-----
야 한다.	-----	-----	-----	-----

현행	개정안
제2조(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수입부와공개에관한규칙)	제2조(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수입부와공개에관한규칙)
제4조(공개등의 방법)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 현황은 등에 수납부를 비치하고 열람 공개하도록 한다.	제4조(공개등의 방법)①----- ----- 구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고액 채납자의 명단을 일간신문 게재 또는 구, 등 게시판에 게시 공개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개할 때에는 등장의 요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일괄 게재하여 공개한다.	③----- ----- <삭제> ----- ----- ----- <삭제> -----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03호

담배소매인지정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1조9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9. 1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담배소매인지정 현황 】

구 분	지정일	지정번호	성 명	사업장 주소	전화 호	비고
일반소매인	2000.9.9	128	박 기 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4동 1259-1	강터쇼핑	

끝